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 검 토 보 고 서

2024. 4. 15.(월)

| 순서 | 검 토 안 건                              | 제 안               |
|----|--------------------------------------|-------------------|
| 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br>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신종갑<br>의원 외<br>6명 |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신종갑 의원 외 6명
- 제안일 : 2024. 4. 2.
- 회부일 : 2024. 4. 3. (의안번호 : 24-37)

## 2. 제안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마포구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제3조)
-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예방 지원 사업(안 제7조, 제8조)
- 마포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안 제9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3

- 입법예고: 2024. 3. 26. ~ 4. 2. 결과: 의견 없음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 5. 검토보고

- 본 제정조례안은 신종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마포구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제정 취지(적정성/타당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이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일부개정])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수행의 근거가 없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할청으로서 안전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제정 현황(24년 4월 기준)
  - 서울특별시 및 18개 자치구 제정 시행 중 자체 예산 편성 자치구는 5개임.(강서, 양천, 도봉, 동작, 영등포구)

(‘24. 4월 기준)

| 연<br>번 | 지<br>역<br>명 | 조<br>례<br>명                       | 제<br>정<br>일<br>자 |
|--------|-------------|-----------------------------------|------------------|
| 1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2020.1.9.        |
| 2      | 서 초 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2024.3.14.       |
| 3      | 은 평 구       |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2024.1.4.        |
| 4      | 용 산 구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2023.12.29.      |
| 5      | 강 동 구       |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2023.12.27.      |
| 6      | 중 량 구       |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2023.11.16.      |
| 7      | 동 대 문 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2023.10.5.       |
| 8      | 성 북 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10.5.       |
| 9      | 구 로 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2023.8.3.        |
| 10     | 송 과 구       | 서울특별시 송과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2023.7.13.       |
| 11     | 동 작 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2023.7.3.        |
| 12     | 강 북 구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2023.4.7.        |
| 13     | 도 봉 구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2022.12.29.      |
| 14     | 노 원 구       |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2022.12.29.      |
| 15     | 강 서 구       |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2022.12.28.      |
| 16     | 광 진 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2022.12.27.      |
| 17     | 강 남 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2022.12.23.      |
| 18     | 금 천 구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2022.4.20.       |
| 19     | 성 동 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2021.12.30.      |

## ○ 조항별 구성 및 내용

- 가. 안 제1조,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마포구 및 그 소속기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그 외에 노동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로 범위를 정함.
- 나. 안 제7조, 제8조에는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함.
- 다. 안 제9조에는 마포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 6. 종합 검토의견

- 고용노동부의 「2022년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2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사업장은 2,976,026개소이며, 종사하는 근로자 20,173,615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130,348명이 발생(총 사망자수: 2,223명-사망 사고자수: 874명, 질병 사망자수: 1,349명 / 부상자: 106,038명, 업무상질병 요양자 21,785명)하였고, 재해율은 0.65%로, 전년 대비 사업장수는 3.46% 증가하였고, 근로자수는 4.10% 증가하였으며 재해자수는 6.22% 증가하였음.
-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은

6,686,486백만원, 직·간접 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33,432,43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62% 증가하였으며, 근로손실일수는 60,701,773일로 전년 대비 0.35% 증가하였음.

**<전년 대비 산업재해 현황 비교표>**

| 연도                      | 적용<br>사업장수<br>(개소) | 대상<br>근로자수<br>(명)  | 재해자수(명) <sup>1)</sup> |                  |                  |                       | 재해율 <sup>3)</sup><br>(%) | 신체장해자수(명)         |                 |                       | 경제적손실추정액<br>(단위: 백만원) |                    |                         | 근로<br>손실<br>일수 <sup>5)</sup><br>(일) |
|-------------------------|--------------------|--------------------|-----------------------|------------------|------------------|-----------------------|--------------------------|-------------------|-----------------|-----------------------|-----------------------|--------------------|-------------------------|-------------------------------------|
|                         |                    |                    | 계                     | 사망 <sup>2)</sup> | 부상               | 업무상<br>질병<br>요양자<br>수 |                          | 계                 | 사고<br>장해자<br>수  | 업무상<br>질병<br>장해자<br>수 | 계                     | 산재<br>보상금          | 간접<br>손실액 <sup>4)</sup> |                                     |
| 2021년                   | 2,876,635          | 19,378,565         | 122,713               | 2,080            | 101,182          | 19,183                | 0.63                     | 41,772            | 31,731          | 10,041                | 32,264,700            | 6,452,940          | 25,811,760              | 60,492,479                          |
| 2022년                   | 2,976,026          | 20,173,615         | 130,348               | 2,223            | 106,038          | 21,785                | 0.65                     | 44,240            | 31,660          | 12,580                | 33,432,430            | 6,686,486          | 26,745,944              | 60,701,773                          |
| 증감 <sup>6)</sup><br>(%) | 99,391<br>(3.46%)  | 795,050<br>(4.10%) | 7,635<br>(6.22%)      | 143<br>(6.88%)   | 4,856<br>(4.80%) | 2,602<br>(13.56%)     | 0.02<br>(5.91%)          | 2,468<br>(-0.22%) | -71<br>(25.29%) | 2,539<br>(3.62%)      | 1,167,730<br>(3.62%)  | 233,546<br>(3.62%) | 934,184<br>(3.62%)      | 209,294<br>(0.35%)                  |

※ 참고

- 1) 재해자수에는 '18.1.1.부터 확대 적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통상 출퇴근 재해는 제외
- 2) 사망자수는 재해당시의 사망자수에 요양 중 사망자수를 포함한 것임.  
※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의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 3) 재해율(%) =  $\frac{\text{재해자수}}{\text{근로자수}} \times 100$
- 4) 간접손실액 : 하인리히 방식에 의하여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의 4배로 계산
- 5) 근로손실일수 :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사망자 손실일수+부상자·업무상 질병요양자의 요양일수
- 6) 증감(%) =  $\frac{2022\text{년도}}{2021\text{년도}} \times 100 - 100$
- 7)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022년도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343천일의 177.0배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산업재해 현황분석>

○ 이와 같이 산업현장에서의 재해자수 증가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일부개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부터 시행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마포구 실정에 맞는 자체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바, 본 조례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안전이라는 단어는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부서는 수시로 주민들 대상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상황별 대응할 수 있도록 표지판 제작, 온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임.

[별표 1]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1호, 2023. 8. 8., 일부개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